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23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6569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21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3호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27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4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34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4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7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51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8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 인천광역시조례 제6579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0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1호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5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2호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68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3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2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4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74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5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7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83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8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99
○ 인천광역시조례 제6589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101
○ 인천광역시조례 제659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0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5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8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28
- 인천광역시규칙 제3199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140
- 인천광역시규칙 제320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3
- 인천광역시규칙 제3201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52
- 인천광역시규칙 제3202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1
- 인천광역시규칙 제3203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74
- 인천광역시규칙 제320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77

훈 령

- 인천광역시훈령 제1220호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규정 179
- 인천광역시훈령 제1221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18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728호 2021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1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19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9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19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9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9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19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19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4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97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1-648호 2021년 워터코디(수돗물 수질검사원) 2차 채용 공고(안) ... 19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12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74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침 215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49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6

조 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69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

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을 분석하고, 예방·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법률적·사실적 의무·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체계

제5조(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

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13조(갈등관리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갈등관리 전 영역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공론화 및 갈등관리 절차

제14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설정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공론화) 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시장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국가적인 재난 상황 발생의 경우 위원회는 실시기간과 연장 횟수의 제한이 없이 기간 연장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론화 절차는 공개한다. 다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론화추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그 절차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 결과 및 권고안을 고려한 공공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론화 실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숙의시민단) ① 시장은 시민 참여와 숙의 활성화를 통한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숙의 시민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구성된 숙의시민단 중 의제별로 필요한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숙의시민단은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숙의를 진행한 후 숙의 결과를 해당 갈등관리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갈등관리추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숙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의 숙의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숙의시민단의 권고 내용은 이해관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⑥ 숙의시민단의 운영 절차와 숙의결과 공개 여부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갈등관리매뉴얼의 활용)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공정책과 사업 등의 계획과 추진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① 시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론화·갈등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공론화·갈등관리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위원회등의 구성원과 절차에 참여한 공무원, 전문가 등은 해당 절차 추진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분야별 추진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강화 및 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기존 위원회에 갈등관리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공론화·갈등 관리위원회로 확대 구성·운영함(제5조 ~ 제11조)

- 나. 위원회에서 공론화 결정한 사안에 대한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다. 갈등관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한 사업부서의 갈등관리를 자문 지원함(제13조)
- 라. 공공정책 관련 갈등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마. 공론화 절차 및 공론화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바. 의제별 숙의시민단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및 제17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88조부터 제9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88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116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치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89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

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장,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90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01.01.)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88조 신설)
-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제89조 신설)
- 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제90조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1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00명”을 “7,224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24명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224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2 (위원장,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02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1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179						
소방정	18	8		10			
소방령 이하 소계	3,16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제2조)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나. 정무직 정원 증원(별표 3)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 0명 → 2명(2명 증)

다. 합의제행정기관 일반직 정원 증원(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90명 → 3,611명(21명 증)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

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다.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 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3호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서간 협력체계 활성화, 공무원 교육훈련, 재정사업의 전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되는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를 통한 지역 성평등 수준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2.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제1항에 따른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

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을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및 편성방향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4.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계획
5. 전전년도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침서 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예·결산서”라 한다)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매년 지침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3년마다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차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침서
2. 제7조에 따른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3. 성인지 예산 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운영
4. 제8조에 따른 시민모니터링단 교육과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성인지예산위원회)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
2. 제7조에 따른 전년도 성인지 예산제 운영성과의 분석·평가
3. 제16조에 따른 포상 추천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 국장,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결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2. 성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센터의 장
4.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또는 소관 부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성과 또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의 경과조치) 제7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성평등 목표 수립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 나. 시민 참여 및 성인지 예산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 및 제10조)
- 다. 성인지예산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제11조부터 15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4호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대상자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2에 따른 기술연수생

2.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나. 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6. “도급”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도급을 말한다.

7.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2.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3. 토목 및 건설현장
4.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5. 상·하수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
6. 외국인 노동자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필요한 교육, 사업 및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그 밖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현장 투입 전, 주간, 월간 교육 실시)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대비 보험 가입
4.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 현장 출입 허용 등 협력
5.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위한 협조
6. 그 밖에 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대한 협력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 과제
2. 사업장 위험성 평가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노동자 건강진단 등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대한 인식 조성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직종 및 업종 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실적 및 평가
 2. 산업재해 발생의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현황 등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별·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
 4.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계획
 5. 공공기관의 유해한 작업 도급 금지 방안
 6.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

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노동자 참여 확대방안 마련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지도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적용대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6.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노동안전보건 관련 법령 등 정보의 공개

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지원
8. 산업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재취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시장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 노동조합, 산재예방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받아 위촉하며, 인원, 자격, 임기 및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③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등 활동 보장을 위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사업장 점검과 예방활동이 사업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6조의 근로자권익보호전담 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5조(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연구 경험이 있는 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결격사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의 해촉 절차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증진 및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 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11조)
- 사.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아. 인천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자. 인천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제22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5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
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다)가 설립한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
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하여 고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확대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속노동자에 대한 범위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2조~제3조)

나.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함.(제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366호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 2020.3.30. 조례 제6366호)」 부칙 제2조 단서의 후단 중 “1년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개정)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7호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전통주 제조업자는 전통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시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
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
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우선 이용) 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나. 전통주 산업 육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5조)

다.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함.(제6조)

라.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8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나.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라.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마.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사.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조의4(인천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

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장착”을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구청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우리 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제2조의3, 제2조의4)
- 나. 법 개정에 따른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제외 반영 및 군구의 등록대행자 선정 및 수수료 징수절차 수립 근거 마련(제3조)
- 다. 길고양이 관리 근거 신설(제1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79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나. 충전기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0호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적 지원방안”을 “지원방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을 “하여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

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 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 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6. 외국인주민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사업
8.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보호 및 지원
9. 외국인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건의료
11. 외국인주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제1조)

나. 외국인주민의 범위 확대(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추가(제4조)

라. 외국인주민의 지원 범위를 확대 규정(제7조)

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의 구성 기준 완화(제8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1호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우리나라 전통무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2호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진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을 촬영 및 판매하고 있는 사진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
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
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역사진관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지역사진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지역사진관”의 정의 규정(제2조)

나.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제4조)

다. 지역사진관의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마련(제6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3호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을 통해 인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 지원 및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

◇주요내용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명시(제5조)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4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업종구분(제12조제2항 관련)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요율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원)		
		2021년	2022년	2023년
가 정 용	1~10	350	380	410
	11~20	560	610	670
	21이상	860	940	1,030
업 무 용	1~50	490	530	580
	51~100	510	560	610
	101~300	1,010	1,150	1,260
	301~500	1,100	1,210	1,330
	501~1000	1,130	1,240	1,360
	1001이상	1,160	1,270	1,390
영 업 용	1~50	830	910	1,000
	51~100	860	940	1,030
	101~300	1,720	1,890	2,070
	301~500	1,800	1,980	2,170
	501~1000	1,850	2,030	2,230
	1001이상	1,900	2,090	2,290
욕 탕 용	1~1000	430	450	470
	1001~3000	720	750	780
	3001이상	1,080	1,130	1,180
산 업 용	1m ³	640	700	770

※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학교,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및 사립대학부속병원 · 병영,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종	구분내용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독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탁구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국·공·사립대학부속병원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 도축장, 정육점 ·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연면적 830㎡, 욕실·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이하의 안마시술소

업종	구분내용
목탕용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춘 목욕장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안의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 입욕요금 외에 발한실 이용료를 별도 징수하는 목욕장업 또는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업 또는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찜질 전문 목욕장업 (사용량 × 최종단계요율)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p>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p> <p>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p> <p>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이유</p> <p>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례를 정비함</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내용</p> <p>「별표 1」의 제2호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를 신설함.</p>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5호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을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7. 노후화 등으로 교체되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 계획이라 명시하여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그 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의 대상을 교통약자 전반으로 확대함(제4조제2항제3호)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내용을 실현 가능하도록 신설함(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4조제2항제7호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6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 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제6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적용 근거 마련(제2조 제1호)
- 나. 복지점수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사망한 직원이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정산금 미반환 규정 신설(제9조제4항)
- 다.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확대 및 명확화
 - (1) 장례절차와 편의제공 범위를 소속공무원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확대(제11조제6호)
 - (2)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과 건강검진 지원항목 신설(제11조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7호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

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절차와 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추천권자가 추천을 위해 검토한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은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을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 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심사수당: 회의 안건을 발의하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 지급
3.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경우 지급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회의)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구성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및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실무협의회 간사) 실무협의회 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무협의회 운영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회의록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예산)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 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시행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지역안전순찰 등) 시행 ③ 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 업소 범죄예방활동 시행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가) 재난이 발생할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①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가·피해자 조사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 및 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 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예방 및 아동안 전 보호활동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기타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 지 등 선도·보 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 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 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 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 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 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 (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 석, 가·피해자 조사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 (APO) 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 절·예방과 가 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폭위 참석, 117사안대응, 가·피해학생 조사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

		<p>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p> <p>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p> <p>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p>
	<p>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p> <p>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p>
	<p>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5)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p>	<p>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p>	<p>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p> <p>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p>
	<p>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p>	<p>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p> <p>② 성매매 단속</p> <p>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p> <p>④ 사행행위 지도·단속</p>
	<p>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p>

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 (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⑤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

	따른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청 및 인계하거나 경찰관서 임시보호 등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③ 기타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 (영상단속, 방문 신고 등)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

		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 안전시설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① 지역 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및 통안전시설 설치여부의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 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3) 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통안전 교육 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통안전 홍보 계획 수립·시행 ② 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 버스의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 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바)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관한 사무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	---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비고: 위 표의 나목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정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21.1.1.시행)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치경찰사무범위(제2조 및 별표)
- 나.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제13조)
- 마.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제14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
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8호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1.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인천광역시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89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①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한 경우

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3. 점검분야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 ① 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①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8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경우

④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②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5. 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② 안전진단: []		
선호지역			
[] 전체 [] 강화군 [] 계양구 [] 남동구 [] 동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옹진군 [] 중구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
광역시장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② 안전진단: []

6. 분 류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 등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 휴업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재개업 신청서
 []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년 월)
	재개업일
	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국내외 장기출장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구분	[] 신규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응용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휴업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재개업신청서
 폐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청인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휴업예정기간 ~ (년 월)
	재개업일
	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기관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국내외 장기출장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조례 제659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하 “리모델링”이라 한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7.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8. 리모델링 지원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3.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단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및 조합(「주택법」 제2조11호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
2. 1차 안전진단 비용
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역재생과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2019년 기준 인천시에 15년이 경과된 주택은 전체의 62%로 확인되며,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주택은 86%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임
- 노후 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주택은 계속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바,
- 새로운 주거재생 방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향상을 위해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지원 근거가 필요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제5조)
- 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등(제10조)

규 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65호 중 “자치경찰제 도입”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로 한다.

제5장(제87조 및 제8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합의제행정기관

제87조(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88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자치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
6.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8. 경찰서장 평가 대응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자치경찰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

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5.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
- 6.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 7.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자치경찰사무 관련 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에 관한 사항
-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 공무원으로 보함(제87조 신설)
- 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에 자치경찰운영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를 분장함(제88조 신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8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제자유구역청 및 사업소”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및 합의
제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 계	7,224	2,369	105	3,187	294	1,245	24
정무직 소계	3	1					2
정무	3	1					2
시장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소계	3,802	2,107	98	90	294	1,191	2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21	13		1	4	3	
부이사관	21	13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156	95	3	4	16	37	1
서기관	67	43	3	2	7	11	1
기술서기관	30	14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56	38		1	3	14	
기술서기관·수의연구원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원	1					1	
5급	621	395	18	10	64	130	4
행정	288	194	14	6	31	39	4
사회복지	2	2					
사서	1					1	
공업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수의	1	1					
해양수산	4	4					
보건	5	4			1		
간호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방송통신	7	5			1	1	
행정·사회복지	10	8				2	
행정·사서	6	1				5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0	3				7	
행정·농업	5	1				4	
행정·녹지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9	24			5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학예연구	4	1				3	
행정·방송통신	2	2					
행정·운전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1	3				8	
농업·수의	2	2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3			3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간호	6	6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방송통신	1	1					
행정·녹지·환경	3	1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1	1					
의무(임시정원)	1	1					
행정·보건(임시정원)	1	1					
6급	1,343	868	39	16	110	301	9
행정	513	367	27	7	41	63	8
세무	32	30			1	1	
전산	61	47	1	2	4	6	1
사회복지	11	11					
사서	7	1				6	
공업	112	41			7	64	
농업	15	11				4	
녹지	25	12			4	9	
수의	6	3		3			
해양수산	18	18					
보건	21	19			2		
간호	6	5		1			
환경	30	26			4		
시설	243	159	3		35	46	
방송통신	26	15			5	6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15	13	1			1	
행정·사서	4	2				2	
행정·공업	5	4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행정·환경	4	3			1		
행정·시설	17	15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9	2	1			16	
녹지·환경	2	2					
녹지·시설	2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3	4	1	1	3	4	
간호조무	1	1					
위생	1	1					
속기	2		2				
방호	4	3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15	1				14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7	7	1	1		8	
행정(임시정원)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보건(임시정원)	2	2					
간호(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3	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1	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1	1					
7급	1,337	664	31	46	86	504	6
행정	441	282	20	11	29	94	5
세무	11	10				1	
전산	43	24		3	1	15	
사회복지	19	16				3	
사서	13	2	1			10	
공업	165	32		6	4	123	
농업	14	5				9	
녹지	30	12			4	14	
수의	2	1		1			
해양수산	9	9					
보건	14	9	1	2	2		
간호	3	3					
환경	23	15	1		3	4	
시설	219	113	1	2	33	70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5	13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7	5	1			1	
행정·사회복지	9	7				2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2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22	18			4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환경	4	4					
공업·시설	18	4				14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3	2				1	
수의·수의연구	7	2		4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3	3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간호·건축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3	3					
전산·보건·간호	1	1					
운전	40	12	3	7		17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6	1		1		4	
전기운영	26	2		1		23	
기계운영	50	1				49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6					6	
보건운영	1			1			
사무운영	51	22		3	2	24	
행정(임시정원)	3	3					
전산(임시정원)	1	1					
세무(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3	3					
간호(임시정원)	1	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1	1					
8급	284	63	4	13	12	192	
행정	78	18	1	3	8	48	
세무	2	2					
전산	1	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사회복지	2	2					
사서	5					5	
공업	76	2		1	3	70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4	4					
시설	49	16			1	3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8			6		2	
위생	1			1			
숙기	3		3				
시설관리	22					22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9급	26	3	1			20	2
행정	4	2					2
사서	1					1	
공업	2	1				1	
시설	2					2	
숙기	1		1				
시설관리	16					16	
전문경력관 소계	7	2	1			4	
나군	6	1	1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사진기사		1		1				
나병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2					2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다군		1	1					
사진기사		1	1					
특정직 소계		3,179	244		2,935			
소방직		3,179	244		2,935			
소방정		18	8		10			
소방령		86	29		57			
소방경		229	37		192			
소방위		336	48		288			
소방장		432	53		379			
소방교		790	45		745			
소방사		1,288	24		1,264			
별정직 소계		18	11	7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2	6				
별정		2	2					
서기관·별정		5		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6급		3	3					
비서		3	3					
7급		3	2	1				
비서		3	2	1				
연구직 소계		193	6		134		53	
연구관		33			25		8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10			10			
환경연구		11			11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학예연구	3					3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60	6		109		45	
기록연구	2	2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8			42		6	
공업연구	2					2	
환경연구	61			52		9	
학예연구	19	3				16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학예연구·편사연구	1	1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9			28		1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4			23		1	
농촌지도	23			23			
어촌지도	1					1	
기능직 소계							
9급							

[별표 7]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자치경찰위원회	계		24		
	정무직	정무	2	위원장1, 상임위원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9	행정8, 전산1
		7급		6	행정5, 운전1
		9급		2	행정2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24명 증원(별표 1)

- 총 정원 : 7,200명 → 7,2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1명 → 3명(2명 증)
- 일반직 정원 : 3,780명 → 3,802명(22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5명 → 156명(1명 증)
 - 일반직 5급 정원 : 617명 → 621명(4명 증)
 - 일반직 6급 정원 : 1,334명 → 1,343명(9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1명 → 1,337명(6명 증)
 - 일반직 9급 정원 : 24명 → 26명(2명 증)

나.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증원(별표 7)

-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 0명 → 24명(24명 증)
 - 정무직 정원 : 0명 → 2명(2명 증/ 위원장1, 상임위원1)
 - 일반직 정원 : 0명 → 22명(22명 증)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199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 원 회	직 위	직 급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전문위원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개정이유

코로나-19, 자치경찰제 시행 등 시민 안전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안전에 관한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 직위명 변경(별표1)

- 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직위 : 기획행정전문위원 → 행정안전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0호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군·구새마을회장(이하 “군·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추천방법) 군·구새마을회장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의 장학생 명단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 (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선발)”을 “(선발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①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추천기관 및 장학금 신청인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과를 통보 받은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구청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군·구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학년도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성명(한글) (한자) (남,여)
- 생년월일
- 지도자 경력: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공적개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년 학과
- 성명(한글) (한자) (남,여)
- 생년월일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 장학생 구분: 유공자 · 우등생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서명)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성적은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 1.소속 학교 학년 학과
- 2.성명 한글 한자 (남,여)
- 3.생년월일 년 월 일
- 4.주소

이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성 적	기 타
1.평점	1.학습태도
2.장학생으로서의 자격여부	

20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0000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명(남 , 여)

구분	인원
계	
유 공 자 장 학 생	
우 등 장 학 생	

2. 장학생선발 예정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명(남 여)

○ 선발예정인원: 명(7%)

구분	인원
인 원	(%)
금 액	
1 인 당 장 학 금	()

※ ()안은 연간 1인당 등록금액

3. 예산확보액: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끝.

○○○○ 군·구 새마을회장 (인)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귀하

[별지 제4호의2서식]

0000학년도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 학생					보호자			구청장 의견 (추천 순위)
성명	학교명	학년	연령	성적	관계	성명	지도자 경력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소 속	학교	학년	과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본인은 20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서명)

보호자 주소		
성명	인(서명)	신청인과의 관계

○○○ 군수 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과
	○	○
		○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새마을회장 직인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20.12.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회장 및 새마을운동 인천광역시군·구 지회장 명칭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 및 인천광역시군·구 새마을회장으로 명칭 변경(제2조 및 제3조)
- 나.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 수정(제4조 및 제5조)
- 다.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제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1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50조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 각 호

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양성평등 사업: 조례 제5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조례 제5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
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0조제5호 및 제8호의 지원사업

제2장 양성평등 사업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이하“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하는 대학·연구소
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의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
3.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목적
2. 지원사업 내용
3.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

④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신청 및 교부) ①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기관등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지원 대상 기관등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행사인쇄물 및 사진 등
4. 그 밖에 증명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제8조(지급범위 등)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학습지원비
2. 질병치료비
3.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
4.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금
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9조(신청절차)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2. 직업훈련 등 관련 수강료 지급 서류
3.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중 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한부모가족 중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시기)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수시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제12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등으로 한다.

제13조(지급범위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비
2. 여성 관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3. 채용장려금

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 및 반납) 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3. 공사 전후 사진 등
4. 그 밖에 증빙자료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16조(심사기준) 조례 제5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여성상 분야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에 노력한 시민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기여한 시민
3.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시민

제17조(추천) ① 조례 제5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6호서식)
2.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주민등록표 등본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

②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공적심의)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추천을 받으면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적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

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조례 제54조제3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단체명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실무자			팩스번호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	기금보조신청액	자체부담액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붙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4. 법인·단체·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실무자		전화번호	
사업명			
신청조건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 교부조건 수용		
소요경비재원			
총사업비	교부신청액	자체부담액	기타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p>「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단체명 : 직인</p> <p>인천광역시장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 명의 통장사본</p>			

[별지 제4호서식]

기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구분	분기별	성명	주 소	생년월일	추 천 사 유	신청액	비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군수.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분	야		
성	명	(한글)	(한자)
주	소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인천거주기간	부터		까지 (년 월)
추	천	이	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 사람을 제〇〇회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자후보로 추천합니다.

- (첨부서류) 1.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1부

〔추천인〕 〇〇 군수·구청장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인천광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분 야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현 직 위	
수공기간	년	월	
경력 및 상별	기간(연월일)	경 력(내용)	비 고

 공적내용

-
-
-
-
-
-
-
-

[비고]6하 원칙에 따라 연도순, 서술식으로 1인당 2 내지 3매가 되도록 작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주소 또는 소속	
직업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품성
- 지역여론
-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비고〕개조식으로 작성한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①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은행명	통장번호	이율	기간			

[별지 제10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출	잔 액

[별지 제11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 원)

연월일	적 요	채 주	수 입	지 출	잔 액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2020. 12. 31. 시행) 내용에 맞춰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내용 중 지원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조문에 맞춰 시행규칙 조문 변경(제2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 나.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신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2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현장사진,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현장사진”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류	⑥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 내용	
공사담당자	⑬성명	⑭기술자·기능자 수리업자등록번호	
	⑮주소		
착공및준공 예정연월일	⑯착공		
	⑰준공		
⑱소요경비	원	⑲재원	
⑳그 밖의 사항			
<p>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인천광역시장 귀하</p>			
첨부서류 설계도서,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3호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허신청 공고일(“양도·양수인가, 대리운전 및 상속승계시는 신청일”로 한다)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

는 화물자동차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제2조제1호나목·다목, 같은 조 제3호 중 “면허신청공고일”을 각각 “면허신청 공고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6년이상”을 “6년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 내”를 “시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기간”을 “동 기간”으로, “13일이상”을 “13일 이상”으로, “13일미만”을 “13일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3일이상”을 “13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5일이상”을 “15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3일미만”을 “13일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동기간”을 “동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준하에서”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 중 “22.운전자”를 “22. 운전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호에 의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4년간 3년이상 시 ”를 “제2호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과거 2년간 1년 이상 시내”로,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용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일보등”을 “일보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5인이상”을 “5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본 (원본지참)”을 “사본(원본지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어문 규정에 따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인용 조문 오류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어문 규정에 따른 문장, 띄어쓰기 등 정비(제2조, 제4조, 제11조, 제14조)
- 나.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 조문 오류에 따른 정비(제7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0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는 별표의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5. 1. ~ 5. 15.	6. 30.
11. 1. ~ 11. 15.	12. 31.

◇개정이유

상·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수시 명예퇴직에 따른 장기간 업무공백 해소, 조직안정성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해 현행 명예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부조문 차구 수정 등 조문 정비(제3조)

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변경(별표)

훈 령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0호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규정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용역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업무 등의 근거 규정이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변경(제정·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함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훈령 제1221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사가 상담·안내하거나 중계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로 한다.

제4조(업무)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콜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관 및 관리책임자를 둔다.

1. 관리책임관: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콜센터 운영업무담당 사무관

② 관리책임관은 콜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관을 보좌하고, 콜센터의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④ 상담사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 관리) ① 관리책임관은 콜센터 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의 상담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관은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만족도 조사) ① 관리책임관은 상담에 대한 민원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만족도 조사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사의 권익보호) 관리책임관은 상담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 2. 상담사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3. 상담사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 4. 그 밖에 상담사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2021. 1. 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상담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120미추홀콜센터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나. 콜센터의 명칭, 업무(제3조 및 제4조)
- 다. 콜센터의 구성 및 운영(제5조)
- 라. 상담사의 상담처리 품질 관리(제6조)
- 마. 상담만족도 조사(제7조)
- 바. 상담사의 권익보호(제8조)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728호

- 2021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복씨앗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지원금	적립금(3년)	비 고
15만원	15만원	1,080만원+이자	

- 선발인원: 총 200명 (단위 : 명)

구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200	6	6	28	22	34	36	22	34	8	4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공고일(2021. 4. 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만 16세 이상~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2.1.1.~2005.12.31. 출생자
-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1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 8. 7.)

-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자인 경우
-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드림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1. 4.14.(수)~4.23.(금)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 동점자일 경우 ①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본인나이 많은 순 ④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1.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 ('21. 4.23.(금)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담당부서 : 붙임 참조

- 붙임 1. 군·구별 담당부서 현황 1부.
 2. 신청서류 1부.
 3. Q&A 1부.

붙임 1 **군·구별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담당부서 현황**

연번	군·구	부서명	팀명	전화번호
1	중 구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760-7664
2	동 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770-6438
3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880-7323
4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749-7706
5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032-453-2573
6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509-6472
7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450-5858
8	서 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560-4314
9	강화군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2-930-3319
10	옹진군	복지지원실	여성장애인팀	032-899-23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변경 사항: 대표자

○ 단체명: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비고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2007-0- 인천광역시 -6호	(사)인천유망 기업연합회	대표자	박영대	김동원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320414	주식회사 다올정보통신 대표 주종석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 포트뷰오피스텔 203호 (중앙동3가)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1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주)제이엠건설 (정재훈)	2021. 4. 6.	인천15002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268, 301호(석남동, 제이엠건설사옥)	전문인력 총원 문제	

2021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취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처분근거)	비고
(주)지디앤씨 (이학주)	2021. 4. 6.	인천1800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11층(송도동)	사무실 미확보 (법 제25조제2항제1호)	등록 취소

2021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대표자)	등 록 취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처분근거)	비고
인스타건설(주) (이대숙)	2021. 4. 6.	인천20000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270, 커널힐스빌 209호	전문인력 미달 (법 제25조제2항제1호)	등록 취소

2021년 4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2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320415	주식회사 글로벌지티아이 대표 김경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8,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501호 (주안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5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4. 7.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단체명칭	변경 사항			변경 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8-0- 인천광역시-43호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예술인회	대표자	정 병 석	이 성 미	2021. 4.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3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법령위반 내 용	행정처분 내 용
203024	주식회사 홀로티브글로벌 (강인철)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인천글로벌캠퍼스 비1112호 (송도동)	정보통신기술 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5일 (4.8.~4.2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3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설립허가 취소 법인

행정처분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행정처분대상	법인명	사단법인 국민안전예방지원협회 (대표자 민태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06번길 4-6(지층)
	허가일자	2018. 4. 6.
행정처분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법인 설립허가 조건(기본재산 예치) 미이행 및 법인 측의 자진 취소신청으로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 위반사유로 취소함.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일 (취소일자)	2021. 4. 6.	

□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 : 2021. 4. 8.(목) ~ 4. 27.(화)

※ 행정처분 관련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청 안전정책과 ☎ 032-440-189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84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1) 업 체 명 : (주)투위
- 2) 대 표 자 : 이동은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215호
- 4) 등 록 번 호 : 제2020-1호
- 5) 등 록 일 자 : 2021. 4. 8.
-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각 호의 업무(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1-648호

2021년 워터코디(수돗물 수질검사원) 2차 채용 공고(안)

상수도사업본부 워터코디(수돗물 수질검사원)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역 4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기간 : 2021. 5. 17.~ 11. 30.

※ 채용기간은 수도사업소별 예산 및 정책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분야 : 가정 등 수용가 방문 수돗물 수질검사 및 결과안내 등

- 검사항목 : 총 7개항목 “탁도, pH,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망간(선택)

다. 채용인원 : 7개조 총 14명(2인/1조 편성)

라. 수도사업소별 관할지역 및 채용인원

총 계	중부수도	남동부수도	북부수도	서부수도
7개조 14명	2조 4명	2조 4명	2조 4명	1조 2명
관할구역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 응시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 “인천광역시 공무원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2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상시근무 가능자이어야 함(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 : 운전면허 소지자로 차량소유 및 임대가능자

다. 우대사항

- 수질검사 또는 수도배관 설비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민원대응(민간기업 포함)업무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시 가점 부여(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으로 본인 사전확인 바람.

3. 근로조건

가. 근무조건(주5일 근무)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소속기관(수도사업소)의 사업일정 등 환경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총 근로시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소 속

기 관 명	담 당 팀	근무지역
중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남동구, 연수구
북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부평구, 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서구

나. 보수지급기준

○ 기본급 : 2,121,350원/월(식비, 교통비, 주휴수당 포함)

○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상여금(6월 이상근무) 지급

○ 지역할증 : 중부수도 “영종” 5,000원/1일

다. 채용해지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모집인원의 300%이상 선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평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모든 평가가 동점일 경우 관련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선 채용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1. 4. 22(월) ~ 4. 26.(금) 18:00까지

나. 교부 및 접수처 : 근무 신청지역의 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중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720-3383 qaz1379@korea.kr
남동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720-3585 kdy109@korea.kr
북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720-3683 briitz@korea.kr
서부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720-3882 sj503@korea.kr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e-mail 제출
(접수기간내 접수된 것만 유효, FAX,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우편 및 메일 접수는 2021. 4. 2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 하며,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 후 발송 하여야 함.
- 메일 접수시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명”란에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증빙서류 포함) 하여야 함 (최종합격 후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근무처별 모두 발급하여야 함)
-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 제출서류 : 붙임-6 신원진술서(앞면 뒷면), 채용신체검사서

7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4. 28.(수) 합격자 개별통지 및 공고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21. 5. 4(화)
- 대 상 : 서류전형(1차) 합격자
- 장 소 : 근무신청지의 수도사업소

※ 면접인원 등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5. 7.(금)
- 방 법 : 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가.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 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비된 서류를 접수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배치 전·후(주기별) 특수건강진단을 동의하지 않거나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검진결과 업무배치 부적합일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검사결과 합격 이외 판정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21. 4. 29.~'21. 5. 10.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바. 기타 세부사항은 신청서를 접수한 수도사업소 수질안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원서
2. 응시원서 작성요령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신원진술서(앞면 뒷면)

[붙임 1]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심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주 소					(전 화 :)
					(휴대폰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소지자격증	전문자격				
	컴퓨터관련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근무처 : 담당업무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근무처 : 담당업무 :)		
성명			성별		
응시분야	워터코디	근무희망기관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응 시 표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사 진 반명함판 (3.5×4.5cm)
응시분야	워터코디	근무희망기관			
응시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붙임 2]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 가. 주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나. 학력 : 최종학력을 기재합니다.
- 다. 경력 : 해당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라. 성명 :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 마. 응시구분 : 공개모집 직종에서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를 직접 기재합니다.
- 바. 근무희망기관 :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수도사업소를 본인이 직접 기재합니다.

기 관 명	소재지	근무지역
중부수도사업소	미추홀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부수도사업소	연수구 앵고개로 183	남동구, 연수구
북부수도사업소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서구
강화수도사업소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 9	강화군

- 사. 생년월일 :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2021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 아.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cm)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반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하며,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함)
- 자. 기타 : 응시번호(※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4.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붙임 3]

이 력 서

구분	응시분야	
내용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학 력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교명	전공	졸업구분	소재지	
						졸업/재학		
							졸업/재학/휴학	
							졸업/재학/휴학	

경 력	근무기간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비고

병 역	구분	병과	계급	소속부대
	필/ 면제			
	복무기간	년 월 ~ 년 월		

외 국 어	언어	능 렷			공인시험	점수
		상	중	하		

OA 능 력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 류	등급

[붙임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5]

-공공기관근로자 공개채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응시자 본인확인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전화번호(휴대폰)	서류전형 및 면접합격 통지 등에 활용	
주 소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용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가족사항, 자격증 등 증빙서류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동의 거부권리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동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6]

신원진술서(약식)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	직장명 :	연락처	직장전화 :			
	소재지 :		휴대폰 : E-mail :			
학력	학교명	기간	전공학과	학위	소재지	
		. . ~ . .				
		. . ~ . .				
경력	기관·업체 및 정당·사회단체명	기간	직책(직급)	상별관계(일자)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병역	군별	기간	병과	최종 계급	미필 사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성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女		
	父			子女		
	母			子女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년	월	일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m²) 또는 중질지(80/m²)]

(뒤쪽)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성명(한자 포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장(직장명, 소재지 포함), 연락처(직장전화, 휴대폰, E-mail 포함), 학력(학교명 등 포함), 경력(기관 또는 업체명 등 포함), 해외거주사실(거주목적, 동반가족 등 포함), 병역사항, 가족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1-15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적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 및 최고)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1.4.9.~2021.4.24.(15일간)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1년 4월 30일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체납본세	반송사유	비고
1	000089	김*철	인천광역시부평구 경원대로 1350 ***동 ****호 (부평동, *****)	좌 동	2020.2.10. 9:22	동구 송림동 백범로	축하중 1.25톤 초과(3축하중 11.25톤)	경기06 소8212	500,000	반송 (폐문부재)	
2	000108	엄*윤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번길 24 (송의동)	좌 동	2020.2.19. 14:22	서구 당하동 서곶로	축하중 1.55톤 초과(3축하중 11.55톤)	경기06 소5789	500,000	반송 (폐문부재)	
3	000141	이*형	경기도파주시조리읍기곡길 ** , ***호	좌 동	2020.3.3. 10:30	계양구 오류동 장제로	축하중 2.30톤 초과(3축하중 12.30톤)	인천06 아6007	800,000	반송 (폐문부재)	
4	000408	오*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경인로485번길 30-** , *층호 (주안동)	좌 동	2020.7.17. 09:47	중구 연안동 서해대로 이동1반	축하중 2.50톤 초과(3축하중 12.50톤)	인천06 사7032	800,000	반송 (폐문부재)	

예 규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 지침 일부 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4월 9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예규 제474호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민원콜센터”를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120미추

홀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콜센터의 장"을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악성·강성민원 유형(제5조 관련)

《악성 민원》

1. 성희롱

상담사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언행 및 그 밖의 요구 행위

2.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상담진행 중 비하발언,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강성 민원》

3. 민원요지불명

콜센터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거나 민원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상담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려 요지파악이 어려운 통화

나. 본인의 정치적 성향·종교·지식 등을 상담사에게 강제로 주입하려는 통화

4. 반복·억지민원

가. 동일한 내용을 수차례 안내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나. 콜센터 상담업무를 벗어났거나 더 이상 민원처리가 불가함에도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

1) 콜센터 상담업무(시본청 및 경제청, 사업소, 통합군·구를 제외한 유관 기관, 타기관 업무는 대표번호만 안내, 미통합군·구는 부서(팀)전화번호 안내)가 아님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제기

2) 공무원 응대태도 불만에 대해 민원처리 방안을 안내하였으나 콜센터에서 처리할 것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3) 콜센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상담을 강요하며 상담사 응대에 꼬투리를 잡으며 불만제기

5. 장시간 통화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하고, 20분 이상 성실하게 상담을 하였음에도 민원

인이 납득하지 않아 상담사가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연결이 어려운 공공기관 및 부서 전화연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상담사의 말꼬리를 잡으며 장시간 통화 지속
나.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 및 안내를 진행하였으나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려하지 않고 장시간 통화지속

6. 상습 강요 민원

가. 인입되자마자 민원인에게 무조건 전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부서 또는 담당상담사 등을 연결해 달라고 3회 이상 요구하는 경우
나.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 상담사 연결을 요구하는 행위
다. 명확한 민원내용 없이 특정 부서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주도록 요구하는 행위

[별표 2]

악성·강성민원 처리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차단기간 중 해당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전화상담 통화를 요청할 경우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음성안내 방식으로 응대한다.
- 나. 이용 정지 기간 중 민원인이 문자, SNS 상담을 통해 회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이용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 등에 대해 문자로 통보한다.

2. 개별기준

가. 성희롱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성희롱 중지 경고	① 1차 법적조치 경고 후 IVR 응대종료 ② 조장 보고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	조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상담사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재발 시 24시간 반복 이용 정지 및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 IVR(Interactive Voice Response) : 음성 자동 응답

※ APP(Application) : 상담사가 상담업무(전화받기, 전화걸기, 상담지식 검색, 상담이력 조회 및 저장 등)를 유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프로그램

나. 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언어폭력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및 조장 보고 ② 2차 상담종료 고지 및 IVR 응대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상담APP 악성민원등록	조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4단계	차단 효과가 없을 경우	월간 이용 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다. 민원요지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3차 경고 및 IVR 응대 종료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	조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 (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라. 상습 강요 민원

구분		처리절차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① 매월 2회까지 민원 요청사항 응대 및 경고 ② 3회차 요청시 경고 및 IVR 응대 종료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상담APP 강성민원 등록	조장
3단계	이용 정지	24시간 이용 정지(재발 시 반복 이용 정지)	상담사

[별표 3]

악성·강성민원 세부 응대 절차(제6조 관련)

1. 성희롱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성희롱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IVR전환) ② 조장 보고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조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악성민원 등록(성희롱)	조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4단계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 재발시 24시간 반복정지 및 법적 고소·고발 검토

2. 욕설/폭언/협박/모욕 등 언어폭력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언어폭력 중지 경고	① 1차 경고 및 조장 보고 ② 2차 상담 종료 고지 및 IVR 응대	상담사
2단계	악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조장 보고 ② 조장 내용 확인 후 상담APP 악성민원 등록(언어폭력)	조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송출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4단계	효과가 없을 경우	법적 고소고발 검토	콜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

※ 이용정지 3회 이상 재발 시 법적 고소·고발 검토

3. 민원요지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IVR 응대	<p><1차 경고>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2차 경고>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3차 경고>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후 IVR 전환</p> <p><IVR 경고멘트 자동송출>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합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조장 보고 ② 조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민원 등록(민원요지불명)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조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자동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재발 시 반복 이용정지

4. 상습 강요 민원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① 1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② 2차 민원응대 및 경고 ③ 3차 경고(IVR 전환) → 응대 횟수 제한 : 월 2회	<p><1차 인입> "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내용 없이 전화(연결) 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p><2차 인입> "문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내용 없이 전화(연결) 요청하시는 경우 이후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p> <p><3차 인입> "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상담이 불가합니다. 통화 종료 하겠습니다." → 멘트 구사 및 조장 보고 후 IVR 전환</p> <p><IVR 경고멘트 자동송출> 명확한 문의내용 없이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2단계	강성민원 등록 조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민원 등록(상습강요민원)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조장
3-1단계	이용 정지	<IVR 연결불가 멘트 자동송출>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재발 시 반복 이용정지

< 문자 민원 상담(민원요지 불명) 시 >

구분	처리 절차	세부 응대 프로세스	처리자
1단계	민원응대 및 경고 후 종료 ① 1차 경고 ② 2차 경고 ③ 3차 경고 및 최종 문자발송 응대 후 종료	<p><1차 경고>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2차 경고> "시민님,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더 이상 상담진행이 어렵습니다."</p> <p><3차 경고>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 문자 발송 후 종료</p> <p><경고문자 수동 송출> 문의내용이 파악되지 않아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24시간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p>	상담사 (문자)
2단계	강성민원 등록 ① 상담사 상담 후 조장 보고 ② 조장 내용 확인 후 상담 APP 강성민원 등록(민원요지불명)	강성민원 등록 시, 동일번호 24시간 이용정지	조장
3-1단계	이용 정지 연결불가 문자 수동 발송	<연결불가 문자 수동 발송>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민님의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담사
3-2단계	정지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이용정지 24시간이후 해제	상담사

※ 문자, SNS 등 민원 재발 시 전화민원 응대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반복 이용정지

5. 이용정지 기간 중 문자, SNS를 통한 상담 또는 아웃콜 요청 시

- 전화민원 응대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이용정지 및 제한 응대멘트 송출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입니다. 상담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2021. 1. 1.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용어 정비(제명, 제1조 및 제2조 및 제4조)

나. 상습 강요민원 용어 설명 정비(별표 1)

다. 상담사 민간위탁관련 용어 정비(별표 2 및 별표 3)

라. 처리절차 정비(별표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49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9.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된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의 명칭을 반영하고, 기존의 문맥상 맞지 않거나 모호성이 있는 조문 등을 변경하여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출장 수요가 높은 중구 영종도를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직원들의 출장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업무용 택시 총괄부서 명칭 변경 【안 제2조제3호】
- 나.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범위에 중구 영종도 포함 【안 제2조제7호】
- 다.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문 수정 【안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 라. 문맥상 어색한 조문 수정 【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 : 택시물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11층, 전화 : 032-440-3806, 팩스 : 032-440-8669, 메일 : cdosj9201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개정조례(안)	찬·반 여부 및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업무택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의 “택시화물과를 말한다.”를 “택시물류과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7호의 “강화군·옹진군·중구 영종도를 제외한”을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근무지 내 및 근무지와 광명 KTX역간 왕래 시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의 “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 및 근무지와 광명 KTX역간 왕래 시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를 “근무시간 중에만 이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송플랫폼을 통한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택시카드를 수령하여 콜배차 및 노상탑승 등의 방법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택시카드로 결제한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제8조제1항으로 한다.

- ① 업무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따른다.

제8조제2항을 신설한다.

- ② 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업무택시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는부서로 인천광역시 <u>택시화물과</u>를 말한다. 단,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는 해당 사업소(출장소)에서 업무택시 총괄부서를 지정한다.</p> <p>4. ~ 6. (생략)</p> <p>7. “근무지 내”란 <u>강화군·옹진군·중구 영종도를 제외한</u>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을 말한다.</p> <p>8. ~ 9.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택시물류과</u>를 말한다. ----- ----- -----.</p> <p>4. ~ 6. (현행과 같음)</p> <p>7. ----- <u>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u> ----- -----.</p> <p>8. ~ 9. (현행과 같음)</p>
<p>제4조(이용기준)</p> <p>① 업무용 택시는 공무수행을 위해 <u>필요한</u>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p>	<p>제4조(이용기준)</p> <p>① ----- <u>필요한</u> 경우, 근무지 내 및 근무지와 광명 <u>KTX역간 왕래 시에만</u> 이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② 업무용 택시는 <u>근무시간 중 근무지 내 및 근무지와 광명 KTX역간 왕래 시에만</u> <u>이용하여야 한다.</u> 다만,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결제시간이 09:00부터 19:00까지 해당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이용한 것으로 본다.</p> <p>③ ~ ⑤ (생략)</p>	<p>② ----- 근무시간 중에만 <u>이용하여야 한다.</u>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용절차)</p> <p>① (생략)</p> <p>② <u>이용자는 공용법인카드로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자동결제 처리된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u> 다만, <u>운송플랫폼을 통한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택시카드를 수령하여 노상탑승 등의 방법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이용요금을 업무택시 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u></p>	<p>제5조(이용절차)</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운송플랫폼을 통한 업무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택시카드를 수령하여 콜배차 및 노상탑승 등의 방법으로 업무택시를 이용하여야 하며, 업무택시카드로 결제한 이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8조(여비) <u>업무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따른다.</u></p>	<p>제8조(여비)</p> <p>① <u>업무택시를 이용한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② (신 설)	② <u>업무용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u>